

●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-144호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.

2025년 03월 25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임시마약류 지정 예고

1.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

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응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'Isoprosaline' 1종(붙임)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

2. 임시마약류의 명칭, 지정사유

붙임 참조

3.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

<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>

○ 효력기간

- (지정 예고)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달까지
- (지정)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
 - ▶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
 - ▶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)되는 경우, 그 시행일부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

○ 취급사항

-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
 - ▶ 재배·추출·제조·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
 - ▶ 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·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
 - ▶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
-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,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

○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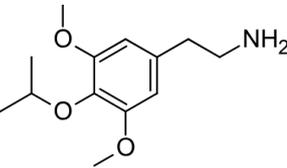
- (지정 예고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15조, 제47조, 제64조, 제69조
- (지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5조의2, 제15조, 제41조, 제47조, 제58조, 제59조,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4조, 제67조

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(예고기간 '25. 3. 25.~'25. 4. 25.) 1부. 끝.

붙임**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(예고기간 '25. 3. 25. ~'25. 4. 25.)****<지정사유 내용>**

가. 구조적·효과적 분류군, 나. 약리효과(중추신경계 자극, 흥분, 억제 등), 다. 부작용 및 유해사례, 라. 국내 반입·유통 여부, 마.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

○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.

연 번	물질명	화학명칭	지정사유	1/2군
1	Isoproscale ine	2-(3,5-dimethoxy-4-pro pan-2-yloxyphenyl)etha namine <화학구조> 	가. (구조) Phenethylamine, (효과) 암페타민 나.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(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, 뇌의 세로토닌(5-HT)-2A 수용체에 특정 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) 다. 정보없음 라.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(중앙관세분석소) 마. 확인 중	2